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평남 의원 (찬성자 17명)

나. 의안번호 : 제 786호

다. 발의일자 : 2019. 7. 24

라. 회부일자 : 2019. 7. 25

2. 제안이유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는 만19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형평성 측면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판단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함. (안 제3조 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

나. 예산조치 : 원안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비용추계 등의 자료 : 원안참조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소방시설 중 조례가 정한 포상금 지급 대상 소방시설¹⁾의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이 신고할 경우에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행 조례의 신청자격 제한(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을 폐지하려는 것임.

■ 비상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경과

- 과거 2010.7.15일 본 조례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

-
- 1) 제2조(포상금 등 지급 대상) ① 신고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 1.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문화 및 집회시설
 - 3.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 4. 운수시설
 - 5. 숙박시설
 - 6. 위락시설
 - 7. 복합건축물(제3호나 제5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②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로 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1) 수신반(受信盤) 전원
 - 2) 동력(감시)제어반
 -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 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폐지조례’라 한다)가 제정되어 약 2년간 시행된 바 있는데,

- 당시 시행과정에서 조례제정 취지인 시민의 소방법령 준수 유도 보다는 포상금제도로 인해 전문신고인의 양산과 주민 간 감시체계에 따른 불신감 조성 등 예상치 못했던 역기능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폐지안 발의)가 이를 전격 폐지(2012.7.30.)하기에 이룸.
-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김태수 의원이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2015.9.23.)」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당시 국민안전처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표준조례안(2016.05.27.)」에 근간하여 이를 조정한 대안 즉,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제안하였고 2016.9.29.일 제정되어 2017.1.28.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표 1]참조)

[표 1] 비상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근거 및 경과

일 시	내 용
2009.12.11	소방방재청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지침 시달”
2010. 7.15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2012. 1.31	소방방재청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개선안 통보”
2012. 2.16	소방방재청,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2. 6.21	개정조례안(시장 제출)부의 ⇒ 폐지조례안 결정 (행정자치위원회)
2012. 7.30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2016. 9.29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정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 조례 운영현황

-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인명사고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피난시설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소방재난본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등급별로 구분하여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소방관서에서 모든 다중이용시설 내의 피난시설에 대한 위법상태를 빠짐없이 상시 감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신고포상금제도는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함은 물론, 그동안 느슨해진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의지를 재충전하고 이를 통해 비상구 폐쇄 및 훼손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시민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 서울소방재난본부의 2019년 5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이후 총 1,49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포상금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333건이며 이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총 7건의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졌음.([표 2,3] 참조)
- 이러한 통계자료에 근거할 때 폐지조례 이후 현행조례 제정 당시 포상금액 축소와 신고자 자격제한 등에 영향을 받아 과거 사회문제화 되었던 전문신고인은 거의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파악되며, 다만 신고 건수(1,494건) 대비 포상금 신청 건수(333건)가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이에 대한 개선은 필요해 보임.

[표 2] 조례시행(2017.1.28.) 이후 불법행위 신고 건수 및 조치내역

총 계	과태료	기관통보	조치명령	현지시정	해당없음	기 타
1,494건	102건	28건	29건	441건	789건	130건

[표 3] 포상금 신청 건수 및 지급 내역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5월
신청건수	333건	147건	132건	54건
지급내역	7건	5건	1건	1건

■ 포상금 신청자격 제한규정 폐지에 대한 의견(안 제3조제1호)

- 안 제3조제1호는, 현행 조례에서 별지 제1호 서식(불법행위 신고 및 포상금 신청서)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신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거주요건 없이 ‘누구든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표 4] 개정안 수정조문대비표 (안 제3조1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신고방법) ① <u>신고일 현재 만19세 이상</u> 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3조 (신고방법) ① <u>누구든지</u> ----- ----- -----.

- 여기서, 현행 조례가 신고포상금 신청자격을 제한한 당초 취지를 살펴보면, 과거 폐지조례 시행 당시 전문신고인들이 미성년자 가족 등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례가 빈발했기 때문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 최근 3년간 7건의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건수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의 전문신고인 양산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현행 조례가 과거 폐지조례와 달리 신고포상금 신청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 [표 4]와 같이 포상금액 축소와 2회 이상 신고부터는 소화기 등 물품으로 지급토록 이중삼중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자격제한을 폐지하더라도 전문신고인이 양산되는 문제가 재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표 5] 폐지조례('12.7.30폐지)와 현행조례('16.9.29제정)의 포상금 규정 비교

폐지조례	현행조례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생략)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한다.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30만원 , 연간(해당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 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점은 신고 접수일로 한다. ④ (생략)	제7조(포상금 등 지급 기준) ① 포상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2.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에 상응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 경보형감지기) ② 같은 사람(동일한 주소지 포함)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 연간 200만원 을 초과할 수 없다. ③~④ (생략)

- 더욱이, 2019.5.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본 조례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에 권고하기를, 현행 「소방시설법」이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자치단체 조례로 신고 적격 대상·기준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신고참여 저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례상 적격범위 확대’를 권고²⁾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여겨짐.

-
-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4),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2019.5.1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주요내용: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에 대한 조례상 적격범위 확대’>
- 「소방시설법」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포상금 지급을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에 위임
 - ※ 「소방시설법」 제47조의3
 - ※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제6조)
 - 각 시·도는 시·도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 서울특별시 등 일부 시·도는,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적격을 만 19세 이상인 자· 해당 지역 주민등록자에게만 부여
 - 시·도별 조례로 신고적격 대상·기준 등을 제한함에 따라 만 19세 미만 청소년 혹은 타 지역 주민이 다중이용업소 이용 시 불법행위를 목격해도 신고참여 저조
 - 법률상(소방시설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신고적격과 같이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적격 범위를 확대하여,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위법행위를 발견한 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